

大統領 選挙法解説

- 새 정치 질서의 기틀 -
(文化公報部)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트는 제도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선거법이 규정한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 방식은 舊 헌법하의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선거와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선거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면에서 전혀 다르다.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첫째, 대통령선거인(이하 선거인)의 被선거권자의 資格要件을 当該선거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이하 대의원)선거의 2년이상 거주자보다 완화하였다.

이는 국민의 보다 광범한 參與의 기회 여부를 뜻한다.

둘째, 선거구와 선거인수에 있어서 代議員선거의 경우 인구 10만명 기준, 1,665구, 대의원 2,583명을 選出토록 하였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인구 5만 명을 기준, 1,905구, 선거인 5,278명으로 크게 늘렸다.

이는 국민 意思를 보다 광범하고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다.

셋째, 不在者신고 우편료를 대의원선거의 경우 有料로 하였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無料로 하였다.

네째, 선거인 선거의 후보자는

① 유권자 2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추천을 얻어 등록토록하여, 300

명 이상의 推薦을 얻어 등록했던 대의원 선거의 경우보다 많이 완화했으며,

②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소속을 금지하였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는 정당소속을 허용하여 정당정치 의 活性化와 정당간의 평화적 政權交替를 보장하였으며,

③ 대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전 90일 이전까지 공무원등의 職을

떠나게 되어 있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選舉公告日 후 3일 이내에 공무원 등의 職을 떠나도록 했다.

다섯째, 선거운동에 있어서

① 대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인의 支持·反對를 금지하였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특정 대통령후보자 또는 政黨의 支持와 反對가 가능하며, ② 대의원 선거의 경우 유신에 관한 主見만 발표가 가능했으나, 선거인

대 비 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 내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선거범처벌 5만원 이상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하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선거권 없는 자 선거구 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선거범처벌 5천원이상 받고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형집행유예기간 경과후 6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안전보장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3년 내 일정납세실적이 없는 자 최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자 선거일 전 3년 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읍·면기준인구 5만명 초과 경우 증설 1선거구당 대통령선거인 2~5명 選出 1,905구 5,2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 및 정수 인구 10만명 기준 초과 경우 증설 1선거구당 대의원 1~5명 選出 1,665구 2,583명
무 로	부재자 선거우편 유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권자 200~300명 추천으로 등록 정당소속 허용 선거일 공고일 후 3일 이내 공무원 등 직에서 해임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유권자 300명 이상 추천으로 등록 정당소속 금지 임기만료 전 90일 이전 까지 해임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대통령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반대 가능 정치연설 가능 합동연설회 2회 연설시간 30분 선전벽보에 소속정당 기재 선거공보에 소속정당 명칭과 입후보 취지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운동 금지 유신과업에 관한 주전만 발표 합동연설회 1회 연설시간 20분 금지 금지

선거의 경우 정치연설이 가능하며,

③ 선거구내 합동연설회에 있어서 대의원 선거의 경우 1회 20분의 연설이 가능했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2회 각 30분의 연설이 가능하며,

④ 선거운동기간중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활동인 集會도 금지되었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정당활동인 集會를 가능토록하여 정당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소속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정당소속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宣傳壁報에 소속정당 記載와 選舉公報에 소속정당명과 입후보취지를 記載할 수 있다.

여섯째, 選舉費用에 있어서 대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公營制를 실시하였으나 음성적인 자기자금 살포가 많았는데 비해, 선거인 선거의 경우 전액 國庫負擔으로 하여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 自己資金 사용을 최대한 막도록 하여 金權·墮落 선거를 방지토록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선거인의 地位는

① 대의원의 경우 임기가 6년이었으나, 선거인의 경우 대통령임기 開始日까지만 신분인 保有될 뿐이며,

② 대의원의 경우 임기종료 후 2년내 국회의원 입후보가 금지되었으나 선거인의 경우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가 금지되고 있다.

이 밖에 선거인에게는 選舉權의 공정한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不逮捕 특권이 부여되며, 國庫에서 여비·수당만 지급되는 순수한 名譽職이다.

여덟째, 투·개표 참관인에 있어서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投票參觀人 4명, 개표 參觀人 6명으로 하였으나, 선거인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투·개표 참관인을 스스로 선정토록 하고 투표참관인 6명, 개표참관인은 8명으로 늘어났다.

아홉째, 選舉訴訟에 있어서 대의원 선거의 경우 個別訴訟는 가능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임기 개시일까지 • 최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금지 • 불체포특권 보유 	대통령 선거인 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6년 • 그 직을 상실후 2년 내의 국회의원 입후보 금지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선거일 전 12~20일 사이 실시 	선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으로 전 60일 이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선정 • 투표참관인 6명 • 개표참관인 8명 	투·개표참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 선정 • 투표참관인 4명 • 개표참관인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5,278명)의 2/3에 미달 경우 실시 	재선거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83명 중 2,000명 미달 경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선거소송 사유로 주장 	선거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송이 가능하나 대통령 선거소송 사유로 되지 못함

나 대통령선거소송 事由로 되지 못하였으나, 선거인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소송 事由로 主張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첫째, 大統領候補者 등록에 있어서

①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 추천이 금지 되었으나, 선거인에 의한 경우 정당 추천이 가능하며,

②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의원 200명이상이 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무소속 후보는 선거인300~500명의 추천으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대통령선거일 공고에 있어서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의원 선거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案件처리 형식으로 공고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인 선거일과 동시에 公告토록 했다.

셋째, 選舉運動에 있어서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을 不許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는 選舉公報발행(정당정견 발표 가능), 매스컴 이용, 贊助演說등을 許容하되 과열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단 선거운동과 대통령 선거운동의 併行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째, 대통령선거 투표방법에 있어서

①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記名投票(이름쓰기)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記票(○표)토록 하였으며,

②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서울의 1개 장소에 집합하여 투·개표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選挙區별로 투·개표토록 하고 있으며,

③ 투표시간과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전원 참석후 일체로 투표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상오 8시부터 하오 2시까지 아무 때나 지정된 투표장소에 자유롭게 가서 투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選舉參觀人은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選定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選定토록 하였다.

여섯째, 選舉管理는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행하도록 했다.

일곱째,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選舉訴訟를 불허하였으나, 선거인에 의한 선거의 경우 인정하고 있다.

이상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투표방식의 실질적인 脫皮를 뜻하는 것이다.

새 대통령 선거제도와 과거 「통대식 선거」 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 대비표와 같다.